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안내문]

☞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해외주식, 해외투자 ETF·ETN(이하 “해외주식형펀드등”)을 순매수 하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오니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아닌 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펀드등을 매수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RIA")' 도입, 현재 RIA(타 증권회사 포함)를 개설하였거나, 2026년 내에 RIA 개설을 계획 중인 고객께서는 아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란?

-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
- RIA에 납입한 투자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 신설

□ RIA 투자 순서

- ① 기존 계좌에서 RIA로 해외주식 입고 → ② RIA에서 해외주식 매도·자동환전 → ③ RIA에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 ④ 1년이상 의무보유

□ 계좌개설 및 한도

1. RIA계좌는 금융기관 별로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납입한도: 5,000만원(금융기관 합산)
3. 납입금액: 해외주식 매도 후 자동환전 되어 입금되는 원화 금액으로만 납입 가능합니다.
4. 의무가입기간: 1년(마지막 납입일로부터 1년)

□ 매도시점별 소득공제비율

1. 26.05.31까지 매도: 100% 공제
2. 26.07.31까지 매도: 80% 공제
3.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매매관련 사항

1. 투자가능 상품: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2. 해외주식매수 불가능, 투자가능 상품 외 매수 불가능
3. 해외주식[매도], 국내주식[매수/매도], 국내주식형펀드[매수/매도] 가능
4. 해외주식 매수는 불가능하고, 해외주식 매도는 납입한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5. 해외주식 매도시 원화로 자동환전 처리되며, 환전은 국가별 결제일에 자동으로 오전 7시 10분경 1차 가 환전이 처리되고, 9시 5분경 정산 시점의 전신환 매도 환율로 2차 정산되며 시스템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차 가환전시 환율은 전 영업일 최종 고시 전신환 매도 환율에 1%를 차감한 환율로 처리되고, 2차 정산시 차액 만큼 지급 처리합니다. 이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진행되고 예수금 부족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주식 매도한도 및 기준가격
 - 신규 매도한도: 납입한도 - 누적납입액 - 미체결/미결제 주문 건의 매도주문 당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
 - 기준가격: 매도주문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결정된 최종시세가액 및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매매기준환율

□ 입금고 및 출금고

1. 세제혜택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 수량으로 한정하고, 당사는 미국, 중국(상해A/심천A), 홍콩, 일본 주식만 입고 가능합니다.
2. 현금 및 대체 입금(원화/외화) 불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 입고/출고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국내주식 및 주식형펀드 입고/출고는 불가능합니다.
4. 출금(원화/외화)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원화: 납입금액 초과분만 가능
 - 외화: 배당금 등 권리발생분만 가능 → 지점을 통한 본인명의 지정이체 만 가능합니다.

□ 권리관련 사항

1. 해외주식 권리 중 유상청약 등 현금납입이 필요한 권리의 행사는 제한되며, 무상증자 및 배당주 등은 권리연결계좌로 자동입고 됩니다. 단, 권리연결계좌로 입고가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됩니다.
2. 국내주식 권리발생시 해당계좌에서 처리 가능하며, 유상청약 등 현금납입이 필요한 권리의 경우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 유의사항

1. RIA 가입자가 해외주식 등을 우회매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IA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투자 펀드(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포함) 등을 순매수 하는 경우 해당 순매수 금액만큼 RIA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2. 양도소득 공제를 적용 받은 고객이 RIA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권리반영 시차에 따른 인출 제한: 액면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 주식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격은 권리락일에 조정되나 신주(또는 분할주식)는 실제 결제 및 입고가 완료된 후 잔고에 반영됩니다. 이 시차로 인해 신주 입고 전까지는 자산 평가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거나 일시적으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국내주식 평가: 당사는 인출 가능 금액 산정을 위한 자산 평가 시 “당일 기준가”, “결제 잔고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권리 입고 전까지는 보유 수량이 변동되지 않아 평가 금액이 왜곡될 수 있으며, 권리 발생 기간 중 인출 계획이 있으신 고객님의께서는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고객별 RIA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RIA 납입한도를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RIA 납입한도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7. 입고가능 주식의 범위: 미국, 중국(상해A/심천A), 홍콩, 일본에 상장되어 제7조1항을 적용 받는 국외 상장주식
8. 입고가능 수량: 제7조1항에 따라 대금결제 완료 기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RIA에 입고 직전 보유한 당사 국외상장주식 중 적은 수량으로 한정
 - * 타 증권사로부터 대체 입고하여 RIA로 출고하려는 경우 25.12.23(결제일) 이전 취득한 주식에 한해서 가능하고 취득일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RIA로 출고불가능
9. RIA 개설시 설정한 납입한도 내에서만 매도 가능
10. 납입한도에 따른 RIA에 입고된 국외상장주식의 매도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
 - * 매도 기준가격: 매도주문 시점 가장 최근에 결정된 최종시세가액
 - * 환율: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매매기준환율
11. 고객이 설정한 납입한도는 매도주문 체결 이후 원화로 환전 되어 대금결제 기간 사이의 시간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초과할 수 있음

II. 세제혜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RIA의 세제혜택 축소

☞ RIA는 해외에 투자된 자산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RIA를 개설한 고객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연금저축, ISA, 신탁·일임 계좌 등 포함)를 통해 해외주식형펀드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RIA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게 됩니다.

☞ 동 사항은 RIA를 개설하기 전이라도 2026년 내에 RIA를 개설한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등을 매수하거나, 또는 RIA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

☞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순매수 시 RIA의 세제혜택 축소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설정·설립된 해외주식형 펀드(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 '해외주식(국외상장주식)', '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 ETN' 입니다. <아래 표 참고>

※ RIA 계좌 혜택 차감 대상상품(소득공제 차감)

대상 상품군		법 및 시행령(안)	세부 상품	비고
국외상장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증권시장 상장주식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DR포함)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ETN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국외 상장주식 대체자산	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ETN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 (변동성지수 포함)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국내설정·발행 ETF와 ETN	해외상품*을 기초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ETF·ETN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주식, 채권, 원유등 상품, 통화 등 또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등)이나 그 가격을 기초로 만들어진 지수	기초자산은 제한없이 모든 해외자산이며, 편입비율 요건 없음
	국내 설정, 설립 해외주식형 펀드 ※ 모자형·재간 접형·합성형 펀 드 제외	펀드 설정, 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해외주식형펀드 ① 펀드 설정·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 ② 3개월(또는 설정일부터) 평잔기준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주식*등 비중 60% 이상 *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DR, ETF, ETN	해외주식등에 포함되는 자산기준은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3. 순매수 시점별 가중치 차등 적용

☞ RIA가 아닌 다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한 금액은 2026년 중 거래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반영되는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1~5월 : 순매수 금액의 100% 반영
- 6~7월 : 순매수 금액의 80% 반영
- 8~12월 : 순매수 금액의 50% 반영

(※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등을 순매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향후 RIA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규모가 커집니다.)

참고

RIA 공제금액 계산방법 예시

☞ RIA가 아닌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고객께서 최종적으로 받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축소·조정됩니다.

$$\text{최종 공제액} = \text{조정 전 공제액} \times \left\{ 1 - \frac{\text{RIA가 아닌 계좌에서의 해외주식등의 순매수금액}}{\text{RIA 내에서의 해외주식 매도금액}} \right\}$$

※ [예시] 각 시점별 해외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매도한 투자자의 RIA 양도소득 공제금액 계산 방법

구분	'26.5월까지	'26.6월~7월	'26.8월~12월
기간별 가중치	100%	80%	50%
RIA 내 해외주식 매도 (매도만 가능)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필요경비)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	600만원	600만원
RIA 외 일반계좌에서의 거래 (매수·매도 모두 가능)	매수	2,000만원	
	매도		1,000만원

[①단계: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공제액(조정 전) 계산]

$$\begin{aligned} \text{해외주식 매도금액} &= 3,000\text{만원} \times 100\% + 1,000\text{만원} \times 80\% + 1,000\text{만원} \times 50\% \\ &= 4,300\text{만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조정 전 양도소득금액 공제액} &= 2,000\text{만원} \times 100\% + 600\text{만원} \times 80\% + \\ &600\text{만원} \times 50\% = 2,780\text{만원} \end{aligned}$$

[②단계: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등 순매수금액 계산]

$$\begin{aligned} \text{해외주식등 순매수금액} &= \text{매수} 2,000\text{만원} \times 80\% + \text{매도} \Delta 1,000\text{만원} \times 50\% \\ &= 1,100\text{만원} \end{aligned}$$

[③단계: 최종 공제금액(조정 후) 계산]

$$\begin{aligned} \text{최종 공제액} &= \text{조정 전 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음수인 경우, 0)}}{\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right) \\ &= 2,780\text{만원} \times \left(1 - \frac{1,100}{4,300} \right) = 2,069\text{만원} \end{aligned}$$

[④단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begin{aligned} \text{세액} &= (\text{양도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 기본공제} - \text{RIA 최종 공제액}) \times 22\% \\ &= (3,200\text{만원} - 250\text{만원} - 2,069\text{만원}) \times 22\% = 193.855\text{만원} \end{aligned}$$

* RIA 공제 적용 전 세액 (3,200만원 - 250만원) × 22% = 649만원 대비 약 455만원 경감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